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009
----------	------

2023년 9월 1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11일, 송도호 의원(찬성자 26명)
-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 다. 상정일자 :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9월 11일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송도호 의원)

### 가. 제안이유

- 건설약자인 일용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건설업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년층 유입을 확대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1) 사회보험료 “분담분 중 일부를”를 “분담분을”로 개정함(안 제9 조제2항).
- (2) 서울특별시조례 제8042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삭제함.

###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본 개정안은 서울시가 ‘21.7.1일부터 건설약자인 일용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건설업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그동안 서울시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분담분 일부를 지원하던 것에서 사회보험료 분담분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한편,
-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분담금과 건설사업자에 대한 고용개선장려금 지원사업이 본 조례에서 현행 일몰규정인 ‘23.12.31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에서, 조례 제8042호 부칙 제2조(유효기간)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임.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9조 (고용개선지원)</b> ① 발주청과 건설사업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u>분담금 중 일부를</u>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p>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재정 지원금과 제</p>	<p><b>제9조 (고용개선지원)</b>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u>분담금을</u>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3항의 고용개선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p> <p>1.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p> <p>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p> <p>서울특별시조례 제8042호 서울특별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칙</p> <p><u>제1조 (생략)</u></p> <p><u>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u></p>	<p>서울특별시조례 제8042호 서울특별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칙</p> <p><u>제1조 (현행과 같음)</u></p> <p><u>&lt;삭제&gt;</u></p>
--	---

- 먼저, 안 제9조제2항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를 사업비에 반영하여 현행 ‘분담금 중 일부’를 지원하던 것에서 ‘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21.7.1일부터 서울시는 시 및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공사에서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사회보험료 본인 분담금의 최대 80%까지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 이에 ‘21.7월부터 ‘23.4월까지 22개월 동안 서울시가 지원한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는 총 약 7억 54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2년 기준으로 연간 약 4억 18백만원에 해당함.

[표]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급현황(‘21.7.~‘23.4.)

지급시기	사회보험료 (국민연금+건강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인원(명)	금액(천원)	인원(명)	금액(천원)	인원(명)	금액(천원)
계	10,527	754,075	4,296	372,990	6,231	381,085
’23.1.~’23.4.	1,357	107,801	537	52,647	820	55,154
’22.1.~’22.12.	5,610	418,020	2,271	206,648	3,339	211,372
’21.7.~’21.12.	3,560	228,254	1,488	113,695	2,072	114,559

- 참고로, 같은 기간(‘21.7.~‘23.4.) 동안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고용개선 장려금은 1,237개 현장 중 276개(22%) 현장에 12억 1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는 ‘22년 기준으로 연간 약 6억 94백만원에 해당함.
- 현행 조례 제9조(고용개선 지원) 제1항에서는 발주청과 건설사업자에게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 이를 촉진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에서 각각 시장으로 하여금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부담금 일부 지원과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고용개선장려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면서,
- 같은 조 제4항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는 현재 만 35세 미만 청년층 근로자와 월 233만원(‘23년 생활임금 고시 월급 기준) 미만 내국인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8~12일 근무시 사회보험료 부담금의 60%를, 월 13일 이상 근무시 80%를 지원하고 있고,

○ (지원기준)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 요율

- 근로일수 따라 본인 부담분 최대 80% 지원

대 상	기 준	지원규모(월간 근로일수별)
청년층 근로자	만35세 미만	8 ~12일 : 60% 지원
저임금 근로자	월 233만원 미만	13일 이상 : 80%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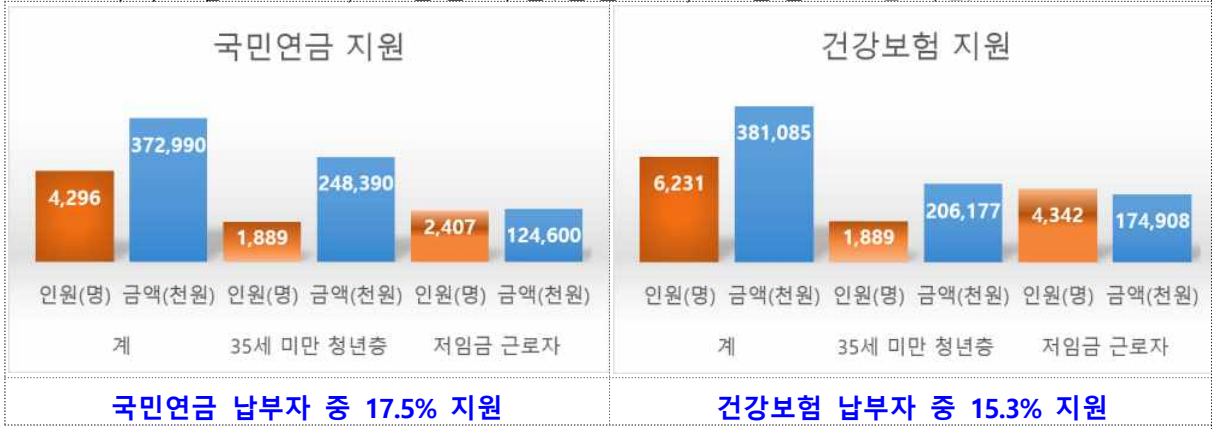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23년 생활임금 고시 월급 2,331,813원 **【적용 233만원】**

- (지원방법) 건설공사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하고 사후 정산

○ (적용대상)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공사

○ 지급현황('21.7.~'23.4.)

- 사회보험료 : 754,075천원 지원(연간 418,020천원 \* 22년 기준)



- 고용개선장려금의 경우도 서울시가 정한 기준1)에 따라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분담금 일부 지원과 고용개선장려금 지원 효과에 대해 서울시 분석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지원 후 청년층 월평균 근로일수는 1일 증가하였고, 7일 이하 근무 비율은 6%가 감소하였으며, 청년층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사회보험료 지원 효과분석

구 분		사회보험료 지원 이전 ('20.7.~'21.6.)	사회보험료 지원 이후 ('21.7.~'22.6.)	증감	
고용안정 지표	전체 근로자	월평균 근로일수	9.8 일	10.4 일	+ 0.6 일
		7일 이하 비율	52 %	48 %	- 4 %
	청년층	월평균 근로일수	10.0 일	11.0 일	+ 1.0 일
		7일 이하 비율	52 %	46 %	- 6.0 %
청년층 비율		8 %	7 %	- 1 %	
내국인 비율		89 %	93 %	+ 4 %	
사회보험	전체	국민연금 가입률	23 %	22 %	- 1 %

1) 고용개선장려금 지급

- ① 상시고용을 촉진한 사업자에게 인센티브(최대 50%)를 지급한다.
- ② 상시고용 평균비율 대비 현장의 상시고용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③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은 “2”를 초과하지 않는다.
- ④ 내국인 고용 90%이상인 사업장에 한정한다.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률	34 %	37 %	+ 3 %
	청년층	국민연금 가입률	37 %	38 %	+ 1 %
		건강보험 가입률	37 %	38 %	+ 1 %

[출처: One-PMIS 노무비명세자료]

- 이에 서울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청년층 건설업 유입 유도를 위한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분담금 지원 확대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게 될 경우 연간 소요예산이 140% 가량 증가(연간 약 6억원)하여 고용개선장려금을 합할 경우 연간 약 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임.

[표] 소요예산 \* '22년 기준

구분	현행 (일부 지원)		금액확대 (전액 지원)	
	인원(명)	금액(천원)	인원(명)	금액(천원)
계	3,339	418,020	3,339	586,259
청년층	1,065	265,496	1,065	344,211
저임금	2,274	152,524	2,274	242,048

- 다음으로, 안 조례 제8042호 부칙 제2조(유효기간) 삭제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회보험료 지원과 고용개선장려금 지원에 대한 유효기간 즉, 2023.12.31일까지로 일몰규정을 두고 있는데 본 개정안이 이를 삭제하려는 것은 향후 지속적 지원으로 전환하려는 취지임.
- '21.5.20일 본 조례 개정 당시 이처럼 부칙으로 유효기간을 두었던 사유는 시범적용을 통해 그 효과와 지속여부를 검증하겠

다는 취지였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21.7월부터 '23.4월까지 22개월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서울시가 보고하고 있고,

- 지금의 건설시장에서 국내 청년인력 부족문제가 건설공사 품질 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심각한 단계에 와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건설현장에서의 국내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숙련된 건설근로자 양성 및 이를 통한 건설공사 품질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서울시 건설혁신과가 건설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sup>2)</sup>, 사업자는 85.5%, 근로자는 92.0%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전문가 8인 중 7인이 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해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남.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 없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 2) 건설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 (사업자) 엄격한 지원요건 및 지원대상 한정 → 효과상승 위해 지원대상 확대 필요  
설문조사\* ▶ [평가: 긍정(85.5%), 연장(69.5%) -사유: 청년층 고용효과]
- (근로자) 사회보험료 일부지원으로 근로자 본인 지원여부 미인식 → 체감효과 위해 근로자 부담분 전부지원 필요  
설문조사\* ▶ [평가: 긍정(92.0%), 연장(83.0%) -사유: 월8일 이상 근로효과]  
\* 출처: 2022년 서울시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건설혁신과)
- (전문가) 근로자 고용개선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8인 중 7인)
  - 고령화 가속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됨에 따라 청년층 유입 없이는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 저하 우려
  - 코로나 시기 청년층 배달라이더 전업, 코로나 이후 청년층 (재)유입 위해 유인책 지속 필요
  - 사회보험료 지원요건 완화 필요(지원 대상 및 금액 상향)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도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09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1일

발 의 자: 송도호 의원(1명)

찬 성 자: 김경훈, 김길영, 김성준,  
김영철,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민병주, 박강산,  
박승진, 박영한, 박철성,  
봉양순, 왕정순, 유정인,  
유정희, 이병도,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임규호,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한 신, 홍국표 의원(26  
명)

## 1. 제안이유

- 건설약자인 일용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건설업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년층 유입을 확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회보험료 “분담분 중 일부를”를 “분담분을”로 개정함.(안 제9조제 2항)
- 나. 서울특별시조례 제8042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삭제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분담금 중 일부를”을 “분담금을”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8042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II.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 (고용개선지원) ① (생략)</p> <p>②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u>분담금 중 일부를</u>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③ ~ ⑤ (생략)</p> <p>서울특별시조례 제8042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p> <p><u>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u></p>	<p>제9조 (고용개선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u>분담금을</u>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조례 제8042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p> <p><u>&lt;삭 제&gt;</u></p>